

정보이용과 이용자 보호대책



김기태

(한국방송개발원 방송정책연구실장)

올바른 정보윤리관의 중요성

‘정보윤리’의 확립이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신기술 매체의 급속한 발전추세에 따라 정보소비에 있어서의 시장확대와 매체도입 확산에만 주력하게 될 때 나타나는 사회적 문제점은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이미 부분적으로는 우리 사회에도 신기술 매체를 올바로 활용할만한 자질을 갖추지 못한 정책 사업자, 이용자 때문에 빚어내는 문제들이 노출되고 있다.

이에 이용자 측면에서 올바른 정보이용 자세와 실천과제, 정보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사회적 대책에 대해 살펴본다.

정보이용자를 세분화해 보면 통신매체 가입자, 컴퓨터 이용자, 멀티미디어 이용자 등 다양하다. 방송, 통신 그리고 컴퓨터 등이 결합되는 기술적 특성과 추세 때문에 수용자 즉 이용자의 위상도 매우 복잡적이고 새로워지고 있다. 일방적으로 보내오는 메시지를 받기만 할 수밖에 없었던 대중매체 수용자 개념에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 된 신기술 매체의 이용자는 상대적으로 선

택성과 능동성이 강화된 위상을 가지게 된 셈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새로운 정보시대의 정보이용자에게는 스스로 매체와 정보를 선택할 줄 알고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자질 함양의 책임성도 요구된다.

기술과 서비스의 발전속도를 이용자의 자질이 따르지 못하면 결국 기술이 인간을 지배하고 나아가서는 조종, 파괴까지 하는 폐해를 야기하게 된다.

정보이용자의 정보윤리관 확립과 올바른 정보이용요령 습득 그리고 정보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이 글의 목적도 궁극적으로는 주체적인 인간의 위상을 되찾고자 하는데 있다. 수준높은 정보이용자들만이 최신기술의 정보매체를 소유하고 활용할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들

관련법규 현황

유해통신매체에 대한 제재나 각종 신기술 통신

[표 1] 이용자 보호를 위한 관련법규·관련조항

<p>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5회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p> <p>제 4 조 : 개인정보의 수집</p> <p>제 5 조 : 개인정보화일의 보유 범위</p> <p>제 6 조 : 사전통보</p> <p>제 7 조 : 개인정보화일의 공고</p> <p>제10조 : 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p> <p>제11조 : 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p> <p>제12조 : 처리정보의 열람제한</p>	<p>제23조 : 전산망사업자 등의 준수사항</p> <p>제25조 : 비밀의 보호</p>
<p>미성년자보호법 (1961. 12. 13. 법률 제834호)</p> <p>제 2 조 : 금지사항</p> <p>제 3 조 : 불량만화의 판매금지 등</p>	<p>전파법 (1961. 12. 30. 법률 제924호)</p> <p>제38조 : 목적외 사용금지 등</p> <p>제42조 : 비밀의 보호</p> <p>제42조의 2 : 통신보안의 준수</p>
<p>사회교육법 (1982. 12. 31. 법률 제3648호)</p> <p>제27조 : 대중매체와 사회교육</p>	<p>청소년기본법 (1991. 12. 31. 법률 제4477호)</p> <p>제46조 : 청소년 복지증진 등</p> <p>제47조 : 청소년 관련 매개물 제작자 등에 대한 지원 등</p> <p>제48조 : 청소년 유해요인 정비 등</p> <p>제49조 : 청소년 비행예방 등</p>
<p>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5회 총회에서 통과된 법률)</p> <p>제14조 : 통신매체 이용유란</p> <p>제15조 : 고조</p> <p>제16조 :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비밀 누설금지</p>	<p>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1986. 12. 31. 법률 제3920호)</p> <p>제 2 장 : 프로그램 저작권</p> <p>제 4 장 :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p>
<p>전기통신기본법 (1991. 8. 10. 전면개정 법률 제4393호)</p> <p>제 5 장 : 통신위원회</p>	<p>통신비밀보호법 (1993. 12. 27. 법률 제4650호)</p> <p>제 3 조 :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p> <p>제 4 조 :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 조치</p> <p>제11조 : 비공개에 원칙</p> <p>제12조 :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제한</p> <p>제13조 : 전화협박 등의 방지를 위한 제한</p> <p>제14조 : 타인의 대화비밀 침해 금지</p>
<p>전기통신사업법 (1991. 8. 10. 전면개정 법률 제4394호)</p> <p>제53조 : 불온통신의 단속</p> <p>제54조 : 통신비밀의 보호</p>	<p>형법 제243조 및 제24조</p> <p>음란한 문서, 도화, 기타 물건을 반포·판매·임대·공개 전시하거나 동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소지·수집·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만원 이하의 벌금.</p>
<p>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1986. 5. 12. 법률 제3848호)</p>	

및 방송매체의 역기능적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법규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전문성과 현실적 타당성을 모두 고려한 관련법규의 정비는 곧 유해 정보통신매체의 퇴치나 정화를 위한 가장 근본적 장치라는 점에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산재되어 있는 관련법규 및 관련조항을 우선 발췌·정리하는 것으로 현황과약을 대신하고 한다. ([표 1] 참조)

이용자를 위한 심의활동 현황

정보통신서비스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불법, 퇴폐적인 내용의 불건전 정보를 차단하기 위한 심의활동이 활성화 될수록 이용자에게 대한 권익침해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이다. 새로운 정보통신서비스가 등장할 때마다 이를 계기로 일시에 수익을 얻으려는 일부 사업자들의 과욕이 정보통신문화 전체를 나쁜 이미지로 물들게 하는 경우가 많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벌면 된다는 잘못된 생각이 이용자들의 건전한 정보이용에 처음부터 가로막고 나서는 것과 마찬가지로는 점에서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심의활동은 자못 그 의의가 크다.

불법과 편법을 통해 불건전 정보서비스가 이루어지면 법률적인 면에서 뿐 아니라 그 내용의 대부분이 청소년 이용자들에게는 물론이고 성인 이용자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불건전한 정보내용이 이용자들에게 전달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심의활동의 중요성이 더해지는 것이다.

보다 실효성 있는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심의활동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먼저 심의활동 현

황에 대해 정리해 보기로 한다. 현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산하 정보윤리위원회가 관련심의 업무를 맡고 있는데 구체적인 활동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2년 7월 30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한 정보윤리위원회는 그해 12월 10일 정보윤리실무위원회를 설치하여 보다 구체적인 심의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사업자들이 신청해오는 정보서비스 내용을 사전심의하여 적합여부를 결정해 주고 있다. 사전심의와 재심의 그리고, 경미한 내용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경우 사용되는 약심의 등으로 구분하여 심의한 후 적합, 보완, 부적합 등의 판정을 내리고 있다.

금년 1월부터 4개월동안 총 1440건(1월 : 331건, 2월 : 352건, 3월 : 435건, 4월 : 322건)의 신청건수 중 모두 106건의 부적합 판정사례가 기록되어 부적합률이 약 7.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의활동의 성과를 엿보기 위해 그동안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정보망을 중심으로 몇가지만 그 내용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불타는 내가슴’(’94.1.28. 접수)

정보내용 : 사람을 살해한 후 주어진 상황마다 선택을 하여 위기를 벗어나거나 체포당하게 되는 시뮬레이션 추리게임.

‘비밀지령 킹카를 잡아라’(’94.2.14. 접수)

정보내용 : 가상 밀림 형식으로 구성된 이성간 행동선택에 따른 심리진단 및 외관타입을 설명하는 정보

‘원초적 비밀’(’94.2.18. 접수)

정보내용 : 체형별 옷차림, 화상 및 연예인의 피부관리 실례, 다이어트, 신체부위별 콤플렉스 해결법에 관한 정보

대부분이 선정적인 정보명을 내세운 과장된 내용들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정보내용 신청시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정보윤리위원회가 제시한 내용을 살펴보면 역시 심의활동의 구체적 범주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외색문화 및 저속문화의 조장 우려가 있는 외국만화, 비디오, 컴퓨터게임, 잡지 등의 내용을 제공하는 정보 불가. 둘째, 바른국어생활을 해치는 억양, 어조 및 비속어, 은어, 유행어 등의 문구 지양. 셋째, 사행심 조성의 우려가 있는 정보내용 등은 불가이다.

또한 불건전 정보의 기준으로 분류해 놓은 내용들을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 반 국가적인 내용
- 인권침해 내용
- 인명경시 내용
- 법과 질서의 존엄성 저해내용
- 공개금지를 어긴 내용
- 성, 음담패설 내용
- 위화감 조성내용
- 비과학적인 생활태도 조장 내용
- 공증도덕과 사회원리 저해내용
- 국민정서에 반하는 내용
- 저작권 위배 내용
- 의약 등의 오·남용 조장 내용
- 불건전 오락물 등의 내용
- 고의적으로 이용시간을 연장하는 내용

○음성에 의한 타인통신 매개성 정보

○기타 정보윤리위원회에서 판단하는 불건전 정보

사전심의 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 작업을 통해서도 음성정보서비스의 불건전사례들을 색출해내고 있는데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총 481건(서울 474건, 부산 5건, 기타 2건)의 모니터 대상 중 모두 47건의 불건전 전화정보서비스가 적발되었다.

'94년 3월 14일에는 심의 받은 후 음란성 내용으로 임의변경하여 서비스한 정보서비스업자를 고발하여 형사처벌을 받게한 경우도 있다.(구속 1명, 불구속 1명, 기소중지 1명 등)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보윤리위원회는 건전정보유통문화를 정립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서비스 사업자수나 종류를 감안할 때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심의 내용의 일관성과 타당성을 보다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심의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새롭게 제기되는 서비스 내용들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 조사와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확보가 중요한 과제이다. 아울러 사업자들에 대한 사전심의만으로는 적발해 낼 수 없는 갖가지 불건전정보서비스 제공 사례가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시민들이나 정보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신고의식이 함양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정부기관이나 규제기구를 통한 정보의 건전화 노력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므로 시민들의 주체적인 정보이용의식과 함께 고양되어야

만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인 셈이다.

올바른 정보이용자세 및 요령

새로운 매체나 정보기술의 증가에 따라 정보이용자들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정보를 소화하고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을 지닌 이용자들은 별로 많지 않다. 제대로 교육을 받은 바도 없고 이에 관해서는 올바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전문가나 교사도 별로 없는 실정이다.

단지 정보가 유용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광고나 단순한 정보접촉기술만을 기계적으로 습득하도록 하는 교육외에 정보윤리나 의식화된 정보이용 문화교육 등을 받아볼 기회가 아예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정보이용 의식화교육 즉, 정보이용 문화 향상 교육을 제안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정보이용의식화 교육은 가정, 학교, 사회에서 모두 환경과 여건에 맞게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정보공급자 또는 사업자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용자 교육에 나서야 한다. 수준높은 정보이용자가 있어야 수준높은 정보이용문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셋째, 올바른 정보이용요령을 습득할 수 있는 대상별 교재개발이 필요하고 여기에 전문적인 지도자가 양성되어 과학적으로 작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넷째, 민간시민운동단체들의 자율적인 시민운동을 통해 정보문화선진화를 위한 이용자의식화

교육이 확산되도록 지원하고 운동단체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불건전정보서비스는 개인의 인권침해나 사생활 침해는 물론 사회적인 문제까지도 야기할 수 있는 폐해요인이란 점에서 시민정신의 활성화 차원에서 신속한 고발정신이 고양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따라서 시민들이 손쉽게 고발 또는 신고할 수 있는 전화나 주소를 광범위하게 마련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광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특별강좌 ‘이렇게 정보를 이용합시다’, ‘올바른 정보이해와 활용법’ 등을 개설하여 대중을 대상으로한 의식화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사회단체의 시민강좌나 종교단체의 교양강좌 또는 청소년 어린이나 여성단체의 각종 강좌 등에 정보이용 의식화교육 과목을 포함시키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곱째, 정확한 정보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연구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조사연구는 일회성 만발연수로 끝내서는 안되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조사 결과를 축적하여 수용자 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의 기초로 활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덟째, 유해 통신매체나 불건전 정보서비스 사례들을 모니터한 결과보고서를 지속적으로 발간하여 사회적 여론화에 힘써야 할 것이다. 신문 게재를 유도함은 물론 정기적인 심포지움이나 세미나를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